

가정폭력 쉼터 퇴소자 욕구에 관한 연구¹⁾

박 영 란(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의 퇴소자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쉼터 이용자의 특성과 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쉼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4년 12월 현재 전국에는 182개의 가정폭력상담소, 29개의 통합상담소, 48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16개 권역의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약 700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자보호시설의 수가 아직 부족하고, 특히 시설이나 상담소가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의 편차가 존재한다.²⁾

최근 쉼터 거주자들의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시설거주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쉼터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운영 모델은 ‘피해자의 일시보호’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퇴소자 122명을 대상으로 2003년8월 - 2004년 11월 사이에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퇴소자 욕구를 조사하였다.³⁾

1) 이 글은 2004년 12월 (사)한국여성전화연합이 개최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체계적 지원과 자립을 위한 대안적 쉼터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2) 여성부가 2004년 9-12월 전국의 19-65세 혼인경험자 6,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5.7%가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현장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쉼터 퇴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2차조사)

(단위: 명, %)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연령	20대	10(10.0)	결혼상태	동거	10(8.2)
	30대	41(41.0)		미혼	3(2.5)
	40대	34(34.0)		기혼	70(57.4)
	50대	13(13.0)		별거	6(4.9)
	60대 이상	2(2.0)		이혼	11(9.0)
합계		100(100.0)	합계		100(100.0)
가족구성	부부	13(10.3)	학력	무학	2(2.1)
	부모 + 자녀	61(69.3)		국졸	12(12.0)
	조부모+부모+자녀	5(5.7)		중졸	25(26.0)
	편부/편모+자녀	2(2.3)		고졸	44(45.8)
	기타	7(8.0)		대졸	13(13.5)
합계	88(100.0)	대학원 이상		0(0.0)	
합계		88(100.0)	합계		96(100.0)
수입원	가족원의 고정수입	57(47.9)	현재 직업유무	있음	32(27.4)
	가족원의 일시적 수입	33(27.7)		없음	85(72.6)
	정부 보조금	2(1.7)	합계		117(100.0)
	각종 후원금	0(0.0)	과거 일한 경험	있음	97(83.6)
	기존 재산수입(임차료 등)	7(5.9)		없음	19(16.4)
	기타	20(16.8)		합계	
합계		119(100.0)	합계		116(100.0)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현황

<표-2>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성 - 다중응답 (2차조사)

(단위: 명, %)

구분	프로그램	참여 빈도 (%)	만족도						효과성					
			매우 만족 (빈도,%)	만족 (빈도,%)	불만족 (빈도,%)	매우 불만족 (빈도,%)	전체(%)	평균	매우 도움 (빈도,%)	대체로 도움 (빈도,%)	별로도움 인됨 (빈도,%)	전혀도움 인됨 (빈도,%)	전체(%)	평균
상담	개별상담	41(85.4)	17(45.9)	18(48.6)	2(5.4)	0(0.0)	37(100.0)	3.40	20(51.3)	16(41.0)	3(7.7)	0(0.0)	39(100.0)	3.43
	그룹상담	32(84.2)	11(34.4)	18(56.3)	2(6.3)	1(3.1)	34(100.0)	3.21	12(36.4)	17(51.5)	2(6.1)	2(6.1)	33(100.0)	3.18
	법률상담	27(84.4)	8(30.8)	15(57.7)	2(7.7)	1(3.8)	26(100.0)	3.15	10(37.0)	14(51.9)	2(7.4)	1(3.7)	27(100.0)	3.22
서비스	의료지원	22(68.8)	8(42.1)	11(57.9)	0(0.0)	0(0.0)	19(100.0)	3.42	10(52.6)	8(42.1)	1(5.3)	0(0.0)	19(100.0)	3.47
	자립지원	10(34.5)	2(20.0)	7(70.0)	1(10.0)	0(0.0)	10(100.0)	3.10	4(44.4)	4(44.4)	0(0.0)	1(11.1)	9(100.0)	3.22
	방과후 아동지도	4(22.2)	3(100.0)	0(0.0)	0(0.0)	0(0.0)	3(100.0)	4.00	3(100.0)	0(0.0)	0(0.0)	0(0.0)	3(100.0)	4.00
	자녀의 전학조치	6(33.3)	5(100.0)	0(0.0)	0(0.0)	0(0.0)	5(100.0)	4.00	6(100.0)	0(0.0)	0(0.0)	0(0.0)	6(100.0)	4.00
여가활동	독서	28(84.8)	10(45.5)	11(50.0)	1(4.5)	0(0.0)	22(100.0)	3.40	10(50.0)	9(45.0)	1(5.0)	0(0.0)	20(100.0)	3.45
	문화체험 (나들이)	24(75.0)	11(22.9)	9(18.8)	1(2.1)	0(0.0)	21(100.0)	3.47	10(55.6)	7(38.9)	1(5.6)	0(0.0)	18(100.0)	3.50
	컴퓨터 교육	5(23.8)	1(20.0)	4(80.0)	0(0.0)	0(0.0)	5(100.0)	3.20	2(50.0)	2(50.0)	0(0.0)	0(0.0)	4(100.0)	3.50
	요리	10(44.0)	4(40.0)	6(60.0)	0(0.0)	0(0.0)	11(100.0)	3.40	5(45.5)	5(45.5)	0(0.0)	0(0.0)	11(100.0)	3.50
	생활소품 제작	14(63.6)	3(23.1)	9(69.2)	0(0.0)	1(7.7)	13(100.0)	3.07	4(40.0)	5(50.0)	1(10.0)	0(0.0)	10(100.0)	3.30
	건강체조	24(82.8)	11(52.4)	10(47.6)	0(0.0)	0(0.0)	21(100.0)	3.52	11(64.7)	6(35.3)	0(0.0)	0(0.0)	17(100.0)	3.64
예술치료	음악치료	18(62.1)	9(60.0)	5(33.3)	0(0.0)	1(6.7)	15(100.0)	3.46	9(60.0)	6(40.0)	0(0.0)	0(0.0)	15(100.0)	3.60
	그림치료	23(74.2)	6(31.6)	11(57.9)	1(5.3)	1(5.3)	19(100.0)	3.15	7(35.0)	10(50.0)	2(10.0)	1(5.0)	20(100.0)	3.15
	원예치료	13(27.1)	0(0.0)	0(0.0)	0(0.0)	0(0.0)	0(0.0)	0	0(0.0)	0(0.0)	0(0.0)	0(0.0)	0	
기타	무료숙식 제공	39(81.3)	23(69.7)	9(27.3)	0(0.0)	1(3.0)	33(100.0)	3.63	28(84.8)	4(12.1)	0(0.0)	1(3.0)	33(100.0)	3.78

3. 퇴소과정

<표-3> 퇴소과정(1차/2차조사)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쉼터에 머문 기간	일주일 이내	12(10.6)	거주기간 만족도	매우 만족 한다	40(35.7)
	1달 이내	36(31.9)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65(58.0)
	2달 이내	35(31.0)		불만족하는 편이다	3(2.7)
	3달	19(16.8)		매우 불만족 한다	4(3.6)
	3달 이상	11(9.7)			
합계		113(100.0)	합계		112(100.0)
귀가하려는 이유 (다중응답)	자녀를 돌보아야하므로	14(100.0)	퇴소 이유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19(22.9)
	화해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5(35.7)		취업을 하기 위해서	16(19.3)
	이혼은 절대 안 되니까	1(7.1)		이혼을 하기 위해서	3(3.6)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5(35.7)		쉼터에 있는 것이 불편 해서	1(1.2)
	친정의 체면 때문에	1(7.1)		다른 쉼터로 가기 위해서	3(3.6)
	남편과의 화해로			자녀문제로	9(10.8)
합계				자립하여	11(13.3)
희망 거주기간	3개월 미만	9(42.8)		귀가	12(14.5)
	6개월	9(42.8)		기타	9(10.8)
	7개월	1(4.7)		합계	
	9개월	1(4.7)	귀가후 필요한 도움 (2차조사)	가족치료	11(50.0)
	10개월	1(4.7)		후속모임	6(27.3)
	합계	21(100.0)		기타	5(22.7)
			합계		22(100.0)
			취업교육 수혜 여부	받았음	21(19.6)
				안 받았음	86(80.4)
			합계		107(100.0)

4. 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표-4> 추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상 담	개별상담(상담치료), 그룹상담 (자조집단)
서 비 스	법률 지원, 생계준비 교육 및 취업알선, 의료지원, 자녀교육 프로그램
여가활동	노래방, 볼링, 문화체험, 운동, 요가, 컴퓨터 교육, 건강체조, 명상음악, 수영, 요리, 오락프로그램, 야외활동, 종이접기, 뜨개질

5. 퇴소 후 계획

<표-5> 퇴소이후 생활계획 내용분석 결과 (중복 응답)

취업(창업) 및 자립 (43명)
남편과의 화해 및 가정의 화목 (14명)
자녀양육 (10명)
이혼 (8명)
타쉼터 입소 (6명) (쉼터에서 살면서 취업)
건강회복 (4명)
기타 (재활, 재혼, 봉사생활, 주거문제 해결, 미결정 등)

III. 결론 및 제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퇴소자 욕구조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특성과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적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이다. 앞의 조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설입소자들은 보호시설에서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상 보호를 받으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받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며, 자립준비를 위

한 교육기회도 제공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보호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쉼터의 중장기 자립지원 기능 강화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는 가정폭력 방지법의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의 업무'는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가정폭력 쉼터는 일시보호의 한계를 넘어서서 피해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 '자립지원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쉼터의 대안적 모델을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파출소, 병원, 법원, 무료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연계기관의 관심과 지원 확대, 의료적 지원 확대, 자립지원프로그램 확충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폭력피해여성 지원의 효과성 제고방안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 헌 〉

- 박영란·황정임(1999),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 외(2001),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여성부.
- 박영란·황정임·김은실 (2002),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조직의 통계지표 및 표준문서 개발」, 여성부.
- 박영란 외(200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기간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여성부.
- 한국여성의전화연합(1999),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2005 권익증진사업안내」 (2005). 여성부.